

발행번호 : 73-0013

# 지급보증서

(근보증용)

수입  
인지

2502139-058833944

2025 년 05 월 16 일

보증처 : [ 몽클레르코리아 ] (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앱( ( www.moncler.co.kr ) )에서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 (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

보증인 (주) 한국씨티은행기업대출업무팀장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

보증금액	45,000,000원정		citibank
보증기일	2025 05 16 년 월 일부터	2026 05 16 년 월 일까지	
피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기간 중에 (1)발생하는 (2)기한이 도래하는 (3)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채무자 명칭 : (주) 몽클레르코리아 (261-81-22990)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58 3층, 4		
채무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철회 기간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li> <li>-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li> <li>-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전 구매 취소로 인해 발생한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li> </ul>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신청인)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 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2.파산·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3.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거래금지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거래금지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 소비자에 한 합니다.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이행청구가 은행에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가능한 보증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 3.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처는 아래의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① 보증처의 환불 요청이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보증신청인이 해당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하는 보증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② 보증처가 보증신청인에게 재화 등의 거래 청약을 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보증채무이행장			
청구금액	위 청구금		
채권자	명칭	년 월 일	
	주소	(인)	

정부수입인지



대한민국정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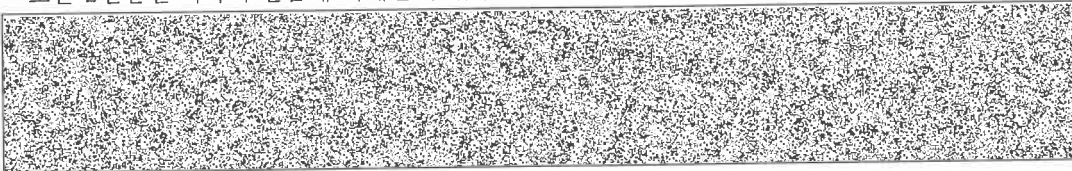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유 변 호 : 2502739-058833944  
(Certificate No.)  
수 입 인 지 금 액 : 10,000원  
(Stamp Duty Amount)  
성 명 ( 상 호 ) : 한국씨티은행 (몽클레르코리아지급보증서  
( N a m e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028114717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한국씨티은행  
(Stamping Channel)  
발 급 일 자 : 2025.05.16  
(Certificate Issued Date)

기획재정부 장관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사용 방법 >

\*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프린터 시험인쇄 요망),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添附)하여 사용합니다.

#### <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

\*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e-revenuestamp.kr에서 수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제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 방법 >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액면금액의 97%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 73-0013

# 지 급 보 증 서

(근 보 증 용)

수입  
인지

2502139-058833944

2025 년 05 월 16 일

보증처 : [ 몽클레르코리아 ] (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앱( ( www.moncler.co.kr ) )에서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 (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

보증인 (주) 한국씨티은행기업대출업무팀장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

<b>보증금액</b>	₩ 오천만원정
<b>보증기일</b>	2025 05 16 년 월 일부터 2026 05 16 년 월 일까지
<b>피보증 채무의 내용</b>	<b>채무자</b> 보증기간 중에 (1)발생하는 (2)기한이 도래하는 (3)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명칭 : (주) 몽클레르코리아 (261-81-22990)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58 3층, 4
	<b>채무종류</b> - 청약철회 기간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전 구매 취소로 인해 발생한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b>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b>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신청인)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 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2.파산·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3.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b>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b>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b>특약사항</b>	1.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거래금지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거래금지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 소비자에만 합니다.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b>보증채무이행장</b>	2.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이행청구가 은행에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가능한 보증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
<b>청구금액</b>	3.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처는 아래의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① 보증처의 환불 요청이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보증신청인이 해당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입증하는 보증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 ② 보증처가 보증신청인에게 재화 등의 거래 청약을 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b>위 청구금</b>	

채권자 명칭 \_\_\_\_\_ (인) \_\_\_\_\_ 년 월 일  
주소 \_\_\_\_\_

계좌번호 169137439-73-0013	고객명 (주) 동블레트코리아 (R)		
계정명 기타원화지급보증대출/기타	통화	실행금액① 50,000,000	이율 1.0000 %
이자금액/보증료② 0	기타공제금액③ 0	차감지금액(①-②-③) 50,000,000	선·후취 선취
대체입금계좌번호	신규일 20250516	만기일 20260516	다음이자납입일 20250516
		이자납입간격 12	개월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만 차주가 부담합니다.)

**저희 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상담 전화

주요 서비스 코드

서울 02) 1588-7000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25	E-뱅크론 대출신청	34
부산 051) 440-7000	대출신규상담	31	대출금상환조회	514
인터넷뱅킹 HELP DESK	대출금상환 및 이자조회	32	대출금이자조회	515
02) 3704-7700	대출계좌조회	33	상당자 통화	9

20250516

거래일

업대출업무팀

(주)한국씨티은행

어음·수표사고신고수수료			
부도처리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결제연장수수료			
불량거래해제수수료			
기타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2025년 5월 16일

기업대출업무팀부점